양도소득세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세금

글 | 정태화 세무사

연예인들과 같은 자유직업소득에 관련된 세금관리법 등에 알아봅니다.

1. 연예인 자유직업소득과 관련된 세금의 쟁점

연예인들은 보통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한다. 이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므로 세무상 쟁점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첫째,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 등에게 자주 발생하는 전속계약금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데 대단히 불리해진다. 1년 동안에 해당되는 전속계약금이 1억원이라면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입증받지 못하면 1억원의 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수입금액의 80%를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은 20%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자 입장에서는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렇다면 세법은 이를 어떤 소득으로 분류할까? 이에 대해 세법은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가 소속회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이 고용관계가 아닌 일신전속에 대한 계약에 해당할 경우 전속계약금, 광고출연료, 연봉, 승리수당, 포상금 등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3%(지방소득세 0.3% 별도)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둘째, 연예인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상할까?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6~35%의 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수입은 보통 3.3% 원천징수과정에서 파악되며, 필요경비는 지출증빙으로 확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문제는 필요경비를 둘러싸고 과세당국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필요경비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필요경비의 정체는 뭘까? 필요경비란 사업과 관련되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즉 수입을 얻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나 인건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같은 일반관리비 등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가 된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집에서 지출되는 전기요금이나 소모품비 등이 있다.

셋째, 장부작성의무는 어떻게 될까?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장부작성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세금을 신고하고,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들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연예인들의 세금관리방법

연예인들은 현금이 지출된다는 관점보다는 본인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세금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금관리법은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자유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

첫째, 수입은 이렇게 관리한다.

연예인은 프리랜서로 대개 방송출연료의 3.3%를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입금액이 100% 노출된다. 그런데 소득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소득이 얼마인지를 가늠하기 힘든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되면 신고할 때 소득의 일부를 누락시킬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평소에 수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고, 소득세 신고기간 때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출력하여 누락을 방지하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은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수입으로 처리함에 유의하자.

둘째, 필요경비 입증요령은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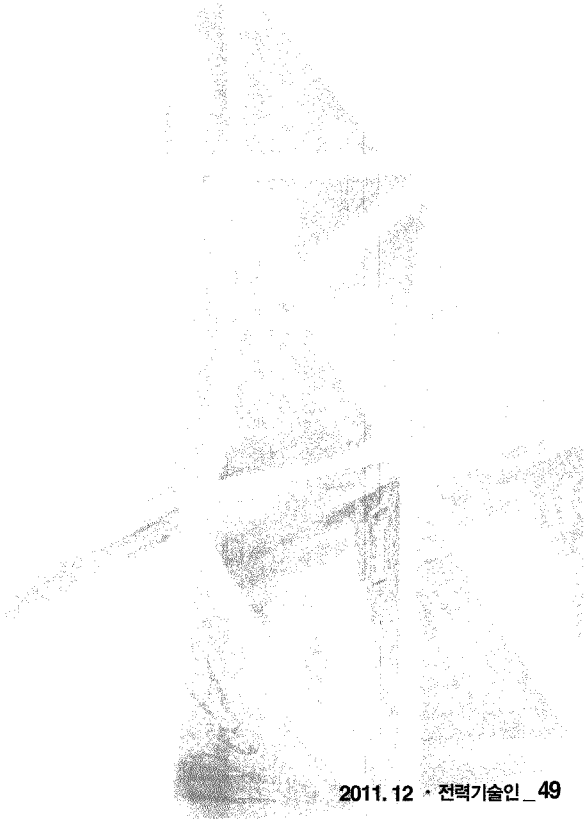
수입이 확인되었다면 이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미리 구비해 두어야 한다. 영수증은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지급사실을 신고해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차량 보험료나 유류대, 수리대 등을 물론 차량구입가격까지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차량구입가격의 비용처리는 4년에서 6년 사인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절세효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예인들이 비싼 차를 모는 것도 이러한 것과 관련이 있다. 경조사비용은 건단 20만원 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청첩장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핸드폰 사용료나 식대 등도 영수증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접대비는 연간 1,2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불우이웃돕기 같은 기부를 하면 10~100% 사이에서 다양하게 비용처리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기획사를 차린 경우에는 수입은 기획사의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월세 등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참고로 연예인이 성형수술이나 마사지 등 미용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유의하자.(논란이 있을 수 있다.) ❖